

의안번호	제634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4년 7월 3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3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7월 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속도감 있는 현안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정무기능을 강화하고자 부지사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명칭변경: 경제부지사 → 정무부지사
- 부지사 분장사무 조정
 - 행정부지사: 도 행정사무 전반
 - 정무부지사: 정무 업무 및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등

3. 의안전문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: 붙임

6.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각각 “정무부지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정무부지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”을 “등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수행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·회의 참석
3. 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“경제부지사”를 “정무부지사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부지사)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 라 한다) 밑에 행정부지사와 <u>경제부지사</u>를 둔다.</p> <p>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>1.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(다만, <u>경제부지사</u>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정부, 국회, 언론,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③ <u>경제부지사</u>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>1. <u>경제통상국, 과학인재국, 투자자유치국, 바이오식품의약국, 환경산림국,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 및 그 밖에 경제관련 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의회, 정부, 국회, 언론, 정당, 경제단체 <u>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4조(부지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무부지사</u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정무부지사</u>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정무부지사</u>----- -----.</p> <p>1. <u>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 · 회의 참석</u></p> <p>2. ----- ----- <u>등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수행</u></p> <p>3. <u>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</u></p>

3. (생략)

으므로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관련 법령

【지방자치법 시행령】

제71조(부시장·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)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, 광역시·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(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)으로 한다.

②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(補)하는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(이하 “행정부시장”이라 한다),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(이하 “행정부지사”라 한다)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,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, 그 직무등급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)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③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(이하 “정무부시장”이라 한다)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(이하 “정무부지사”라 한다)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,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.

④ 행정부시장·행정부지사는 시·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, 정무부시장·정무부지사는 해당 시·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, 시·도의 정무부시장·정무부지사는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·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·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·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속도감 있는 현안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정무기능을 강화하고자 부지사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

행정국 행정운영과장 이택수